

『증권저축계좌 서비스』 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**참고자료**이며, 실제 계약은 (증권저축계좌 특약)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개요 및 특징

- 은행이 실명확인을 통해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대행하고 제휴 증권사의 증권계좌에 은행 요구불계좌를 연결하는 서비스로, 은행 요구불계좌와 제휴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합쳐 ‘증권저축계좌’라고 합니다.

2 수수료에 관한 사항

- 증권거래에 수반되는 수수료는 제휴 증권사 수수료 정책에 따릅니다.

3 서비스 해지에 관한 사항

- 은행영업점을 통해 제휴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절차에 준하여 고객은 해지 신청을 하고, 제휴 증권사의 해지 승인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4 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

- 은행 요구불계좌의 압류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또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5 은행 이용자가 유의 해야 할 사항

- 제휴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대상은 내국인으로서 실명의 개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단, 은행 비대면채널을 통한 제휴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은 만 19 세이상 개인에 한합니다.
- 미성년자와 대리인에 의한 개설은 제휴 증권사의 개별계약에 따라 제한이 있으니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제휴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시 연결한 은행 요구불계좌는 양도, 양수 및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.
- 제휴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후 증권거래 방법은 해당 증권사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참고합니다.

6**기타 계약의 주요 내용**

-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증권사는 은행과 제휴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로 한정합니다.
-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,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문의는 영업점과 고객센터(1599-1111)로 연락바랍니다. 서비스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(080-933-1111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